서울특별시 마포구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홍민 의원)

의 안 번 호 19-169

발의년월일 : 2019. 11. 22.

발 의 자 : 이홍민, 권영숙, 김영미,

김진천, 서종수, 장덕준,

정혜경, 채우진, 최은하,

한일용

1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마포구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
- 나. 공동이용시설을 규정(안 제3조)
- 다.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을 규정(안 제4조~안 제5조)
- 라.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에 관해 규정 (안 제6조~안 제7조)
- 마.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그 센터의 업무를 규정 (안 제8조~안 제9조)

- 바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(안 제10조)
- 사.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하여 규정(안 제11조)
- 아.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의 환수(안 제12조~안 제13조)
- 자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(안 제14조)제12조~안 제13조)
- 자.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(안 제14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3조
- 나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10조
- 4. 예산조치: 2019. 11. 21.~11. 25.
- 5.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6. 조례안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주민협의체"란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 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.
- 2. "사업추진협의회"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.

제3조(공동이용시설)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제3조제5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- 1. 커뮤니티·학습·회의 공간, 공연·전시 시설, 운동시설,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·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- 2.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·경비실, 보안·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- 3.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,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

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

제4조(주민의 참여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마포구"라 한다)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,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(주민협의체)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(이하 "대표"라 한다)는 주민협 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 - 1.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결서
 - 2. 주민협의체 규약
 - 3. 주민협의체 구성원 명단
 - 4. 주민협의체 설립동의서
 - 5. 주민협의체 운영계획서
- ④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도시재생위원회) ①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」제3조제3호에 따라 마포구 도시계획위 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.

제7조(전담조직의 구성·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 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.

-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,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) 영 제15조제2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"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도시재생관련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지원
- 2.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
- 3.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소통
- 4.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
- 5. 빈 점포·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, 공동육아 및 돌봄, 지역축제 등지역주민·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·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위
- 6.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
- 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**제1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)**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사업추진협의회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

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,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시민단체 등 관련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,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,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-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, 규모, 특징을 감안하여 다양한 체계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명, 인력구성, 임원선출, 운영규정 등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방식은 구성원간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.
-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·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- 제12조(도시재생사업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한다.

제13조(지원금액의 환수)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한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며,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 및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- 1.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
- 2.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
- 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
- 5.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

제14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 항에 따른 건폐율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

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